

# 지방교육세 전출

## 1 기본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교육·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함으로써 서울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		
사업비 (당해년도)	1,458,183,636천원	(국비)	(시비)1,458,183,636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#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평생교육국	교육정책과	이방일 2133-3910	정덕영 2133-3912	김현중 2133-3917

## 2 예산 설명

### 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(x-)
계	(x-) 1,660,840,735	(x-) 1,458,183,636	(x-) △202,657,099	(x-) △12
법정전출금	(x-) 1,660,840,735	(x-) 1,458,183,636	(x-) △202,657,099	(x-) △12

### 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
법정전출금	○ 지방교육세 전출 1,458,183,636,000원	= 1,458,183,636천 원

### 3 사업 설명

- 사업목적
  - 교육·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함으로써 서울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
- 사업근거
  - 법령상 근거
    -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
    -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
- 사업내용
  - 지원대상 : 서울특별시교육청
  - 사업기간 : 2018. 1 ~ 12월
  - 사업내용 : 지방교육세 총액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
    - ①취득세 등록분 중 100분의 20 (=취득세(취득분+등록분)의 100분의 10) ②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③레저세액의 100분의 40 ④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,399 ⑤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⑥재산세액의 100분의 20 ⑦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
  - 총사업비 : 1,458,183,636천원
- 추진경위
  -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입의 100%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전출

□ 2018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,458,183,636	
전월세입실적 검토 및 전출대상금액 산정	2018.01~2018.12		
지방교육세 전출(당월분의 90%)	2018.02~2018.12	1,312,365,272	매월 말일까지 전출대상액의 90% 전출
지방교육세 전출(정산분)	2018.07~2018.12	145,818,364	4월 7월, 10월, 12월 정산분 전출

### 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○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 1,344,342,275천원 전출
2016년도	○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 1,318,179,366천원 전출
2017년도	○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 1,218,551,000천원 전출(10.31.기준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교육·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함으로써 서울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

**5**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4	(x-) 1,162,440,029	(x-) 0	(x-) 0	(x-) 1,162,440,029	(x-) 1,162,440,029	(x-) 0	(x-) 0
2015	(x-) 1,344,342,275	(x-) 0	(x-) 0	(x-) 1,344,342,275	(x-) 1,344,342,275	(x-) 0	(x-) 0
2016	(x-) 1,318,179,366	(x-) 0	(x-) 0	(x-) 1,318,179,366	(x-) 1,318,179,366	(x-) 0	(x-) 0